
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1. 방문판매원등 명부 작성 사항(안 제10조의2제1항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방문판매원 등의 명부 작성 의무가 부과되어 세부내용을 규정할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방문판매원등 명부 작성시 성명·소속(금융상품판매·대리중개업자의 경우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할 때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포함) 및 전화번호를 포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확실성 해소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2. 홈페이지 운영시 방문판매원등 신원 확인(안 제10조의2조제2항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방문판매원 등의 신원확인 의무 부여
-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신원확인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홈페이지 운영시 특정 방문판매원등 신원 확인할 수 있도록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판매원 등의 신원확인 가능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3. 연락금지요구 사항을 구두로 알리는 경우 추가 알림 (안 제16조의2제1항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 소비자가 연락중지요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함
-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구두로 알리는 경우에는 다른 수단을 통해 추가로 알리도록 하여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위하여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을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알린 경우 1개월 내에 서면, 전자우편,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추가적으로 알림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일반금융소비자가 연락중지요구에 관한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,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로부터 일상을 보호할 권리를 보장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4. 연락금지 요구에 대한 1개월 내 조치의무 마련(안 제16조의2제2항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 소비자의 연락금지 요구에 즉시 따라야 함
- 연락금지 요구에 따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할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일반금융소비자가 연락금지를 요구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1개월 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일반금융소비자가 연락금지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신속히 조치하여 평온한 일상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 마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5. 연락금지 요구에 대한 의무 이행 시스템 마련(안 제16조의2제3항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 소비자의 연락금지 요구에 즉시 따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
- 연락금지 요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일반금융소비자가 연락금지를 요구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이에 즉시 따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, 유무선 통신, 서면 등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일반금융소비자가 연락금지 요구를 통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로부터 일상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 마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6. 연락금지요구 시 소비자 부담 방지(안 제16조의2제4항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 소비자의 연락금지 요구에 즉시 따라야 하는데, 시스템 세부내용에 따라 금융소비자 부담이 생길 우려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연락금지요구 의무 이행 시스템 마련시 전자우편 또는 수신자 부담 전화 등의 조치 필요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연락금지요구에 있어 일반금융소비자의 부담가능성 최소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7. 기관 및 임직원 조치 기준 마련(안 별표1 11의2호, 11의3호, 11의4호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기관 및 임직원 조치 기준 마련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법 제16조의2 제1항·제2항·제3항, 제21조의2제2항·제3항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
-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이 이 법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법 제16조의2제1항·제2항·제3항, 제21조의2제2항·제3항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방문판매등에 대한 규제 실효성 확보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8. 과태료 개별기준 마련(안 별표4 버목, 어목, 저목, 처목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개별기준 마련

나. 제·개정 내용

- 방문판매등을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임직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방문 판매등에 앞서 금융소비자에게 성명등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법인 300만원, 법인이 아닌 자 100만원
- 연락금지를 요청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한 경우 과태료 법인 1,000만원, 법인이 아닌 자 500만원
- 야간(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)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연락한 경우 과태료 법인 1,000만원, 법인이 아닌 자 500만원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방문판매등에 대한 규제 실효성 확보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